

13.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- 발 의 자 : 하중환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태우 의원, 류종우 의원,
박종필 의원, 손한국 의원, 육정미 의원, 이재숙 의원,
전경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0월 17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하중환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 및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‘영유아’, ‘발달 지연’, ‘개입’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,
- 안 제3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지원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7조는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매년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통계청의 최근 3년간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‘심화평가 권고’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.

※ 영유아 발달평가 ‘심화평가 권고’ 비율 : 2018년(2.06%), 2019년(2.19%), 2020년(2.37%)

- 본 조례안은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영유아기의 경우 초기 발달지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조기진단 및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데에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대구시에서는 영유아 발달지연 지원을 위해 발달 장애아동 통합 교육지원 센터 운영, 발달장애아 가족 양육지원,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, 추진 사업들이 건강증진과, 장애인복지과, 출산보육과 등 담당부서들이 흩어져 있어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중복 및 누락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 따라
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만큼, 관련 기관·단체 뿐만 아니라 부서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.
- 한편 영유아 발달지연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나,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일시적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인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,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매뉴얼 보급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영유아 발달지원 업무 특성상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잠재적인 발달지연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	그렇게 하겠음.
조례 제정 후 영유아 발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.	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며, 영유아 발달 통합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.
영유아 발달지연 지원사업 추진 시 의료 전문인력을 활용하는지 궁금하며, 영유아 발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에도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.	개별 사업 추진 시 전문상담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, 센터 운영 시에도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